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결의안

의안번호	제192호
의결년월일	99. 7. 8 (제71회)

발의년월일 : 1999. 7. 7

발 의 자: 우재극 의원 외 17인

□ 주 문

○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을 별첨과 같이 제정한다.

□ 제안이유

○ 부천시의회의 모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품위 유지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지향하여야 할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히고 실천할 방향지표를 정립함으로써 의회의 권위와 명예를 확립하고자 함.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기 위한 부천시의회의원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실천할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않는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서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함은 물론 부천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
6.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의원 서로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합의에 이르는 바람직한 의정풍토 조성에 노력한다.